

의안번호	제 64 호
의 결 연 월 일	2014년 10월 일 (제 335 회)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장선배 의원 등 7명
발의연월일	2014년 10월 2일

#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장선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4
----------	----

발의연월일 : 2014년 10 월 2 일  
발 의 자 : 장선배, 박봉순, 박한범,  
박종규, 임병운, 최병운,  
이광희

## 1. 제정이유

- 빈곤 취약계층(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이 70%이상 거주하고 있는 충북소재 영구임대주택 단지의 슬럼화(slumism)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충북 영구임대주택 세대수(총 6,139세대) : 청주 3,125세대(용암 1,140, 산남 1,985), 충주 1,582세대, 제천 1,074세대, 증평 358세대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협의 체계 구성 및 필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생활공동체를 만들고, 나아가 입주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도 조례 제정을 제안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5년 단위 수립(안 제5조)
- 나. 입주자 경제역량 강화 및 자활 촉진 사업 지원(안 제7조)
- 다. 입주자 건강, 자살예방 등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지원(안 제8조)
- 라. 입주 아동의 건전 성장을 위한 학습, 결연 등 사업 지원(안 제9조)
- 마.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지원(안 제10조)
- 바.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주체와의 협력(안 제11조)
- 사.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관련 기관 및 단체 위탁 규정(안 제12조)
- 아. 영구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 위원회 구성 등(안 제13조~제21조)

## 3. 제정조례안 : 붙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4-23호

라. 협의 :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와 협의하였음.

마.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생활공동체를 만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적으로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2.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주체“란 영구임대주택을 건설·공급·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영구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포함 한다)를 말한다.
4. “복지서비스시설“이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복리시설과 사회복지관·어린이집 및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생산활동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 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체의 책무)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이 입주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확충 하는 등 주거복지 환경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제5조(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

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3.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군수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④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법령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각각 부담한다.

제6조(주거복지 상담사)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영구임대주택에 주거복지 상담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거복지상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활실태 점검, 고민 상담 등 개별사례에 대한 관리
2. 주거이동 상담, 상위주택 이동 지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3. 복지수요 파악 및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필요한 상담 및 지원

제7조(입주자 경제역량 강화) 도지사는 입주자의 경제역량 강화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등
2. 채무 및 파산 등 경제회복에 대한 상담
3.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8조(보건복지서비스 강화) 도지사는 입주자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 프로그램 개발
2.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구축
3. 지역 보건복지 서비스기관을 활용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제9조(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 도지사는 영구임대주택 거주 아동의 건전 성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
2. 학습동기 부여, 학습여건 지원, 진로지도 및 상담
3. 소년·소녀 가장 등 결손 가정 아동을 위한 기업, 단체 등과의 결연추진
4. 그 밖에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제10조(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①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임차인대표자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입주자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소통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차인대표자회의 운영 등 주민 자치활동
2.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
4. 배려와 상생의 공동체 분위기 조성

제11조(사업주체와의 협력) 도지사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와 협의·협력하여 추진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에 따라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장 영구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사업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영구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행정적·재정적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보건복지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군 담당 공무원
3. 입주자 대표
4. 사업주체
5. 영구임대주택 내 사회복지관의 대표
6. 주거복지, 의료복지, 일자리 창출 등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의 위촉직 위원이 해당 직위를 상실하였을 경우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회의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가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 보건복지국 해당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20조(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안건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요청에 부응해야 한다.



제21조(수당 등)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지역협의회)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지역차원의 협의 및 추진을 위해 시·군별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

##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9.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제60조(국민주택기금의 설치 등) ① 정부는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
4. 제61조에 따른 예탁금
5. 제67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7. 제75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자금 중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조성된 자금
8. 출자기관의 배당수익 및 대출자산의 매각자금
9.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
10. 국민주택기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과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11.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에 따른 부대수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④ 제2항제8호의 대출자산의 매각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

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관리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4. “복지서비스시설“이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생산활동시설 등을 말하며, 복지서비스시설의 종류와 규모,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

2.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

3.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
4. 그 밖에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입주자의 참여)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입주자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입주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주체의 관리의무) ① 사업주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 시설이 입주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임대주택법」 제31조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① 사업주체는 건축물의 노후화를 방지하거나 노후건축물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리모델링(「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할 수 있다.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국가는 이에 사용되는 재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2조(복지서비스시설 종류·규모 및 설치) 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부대시설
2.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자활과 고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

4.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지소,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등을 위한 시설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사회복지관을 신축·증축·대수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지관에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설치에 대한 우선순위와 규모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물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각각 부담한다.

제3조(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는 법 제3조 각 호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 편성 시 미리 사업주체에게 필요예산의 추산액(推算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말한다.

1.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
2. 쾌적한 단지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3.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입주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개발 사업
5. 입주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사업

6.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사업
7.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각각 부담한다.

제6조(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의 경우 필요한 조치) ① 사

업주체는 법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 또는 법 제9조에 따른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 내부·외부로의 이동 편의 증진

2. 인근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복지서비스시설 확충

② 사업주체는 법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임시수용시설 설치 등 입주자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법 제8조에 따라 리모델링을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 수립 시 미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